



제322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제 2 차 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10. 8.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- 음악·뉴미디어 특화 도서관인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이며, 위탁 계약기간 (2023.10.22.~2026.10.21.) 종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독서진흥 서비스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중단없이 제공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 내용

- 도서관 및 부속시설(진영공원주차건물)의 시설관리·운영,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
- 도서관 소장자료의 이용 및 열람 제공, 대출에 관한 사항
- 뉴미디어 특화도서관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, 홍보, 운영
- 독서진흥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기획, 홍보, 운영
- 책드림서비스 등 타 도서관과의 상호협력 서비스 제공
- 기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

2) 위탁시설 개요

○ 소재지 : 화도읍 맷돌로 84

○ 시설현황 : 도서관(연면적 4,877㎡), 주차장(지상3층, 연면적 2,863㎡)

층 별	세 부 내 용	비 고
1층	기계실, 전기실, 카페(돌꽃), 카페존, 계단형관람석(특화공간)	
2층	유아자료실, 어린이자료실, 이야기방, 사무실, 패밀리존	
3층	종합자료실, 세미나A, 세미나B, 컨퍼런스A~D, T-라운지	
4층	뮤직아트홀, 댄스스튜디오, 크리에이터스튜디오, 레코딩스튜디오, 뮤직스튜디오1~4	특화공간
기타	옥상정원(5층), 부설주차장(주차건물, 지상3층)	

○ 위치도



3) 민간위탁 기간

○ 2026. 10. 22. ~ 2029. 12. 31.

4) 수탁기관 선정방식

○ 공개모집(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선정)

5)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○ 소요예산 : 1,644,350천 원(2026년 기준)

○ 산출근거

(단위: 천 원)

구분	계	인건비	운영비	자산취득비	행사운영비	기본경비
예산액	1,644,350	1,007,308	345,242	100,000	179,200	12,600

6)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음악·뉴미디어 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하여,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와 민간의 예술·기술 역량의 융합을 통한 운영 시너지 창출이 필요한 사무임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공공도서관 고유의 안정성과 공익성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을 균등하게 제공하며, 정기적 지도·감독 및 성과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무임
경제적 효율성	○ 민간의 유연한 조직 운영과 문화예술계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, 특화 사업 기획 및 운영에 예산 대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특화된 미디어 창작 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수준 높은 예술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의 검증된 기술력과 전문지식이 요구됨
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연례 지도·점검과 만족도 조사 및 정기평가를 통해 축적되는 정량·정성적 지표가 명확하여 위탁 성과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사업계획서 심의, 분기별 실적 보고, 연례 지도·점검 및 수시 현장 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여 위탁 사무 전반의 투명성과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	○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및 사회적 기업 등 전문 수탁 후보군이 형성되어 있고, 도서관 기본 기능과 더불어 지역사회 문화예술 사업 및 예술 인재 발굴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
종합의견	○ 개관(2021년) 이후 민간의 풍부한 문화예술 네트워크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브랜드 사업(관세페,레이블석영)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,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우수한 정량·정성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○ 빠르게 변화하는 뉴미디어·문화예술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, 도서관에 안착된 문화적 활력을 끊임 없이 이어가며 융복합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○ ‘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’은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

7)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해당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관련부서 : 정약용도서관과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의 관리·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.
- 위탁사무는 도서관과 부속 주차시설의 관리·운영, 소장자료의 이용·관리, 뉴미디어 특화 프로그램과 독서 프로그램의 기획·운영,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협력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음.
위탁기간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 2개월이며, 공개모집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내용임.
- 검토 결과,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뮤직아트홀, 레코딩스튜디오 및 크리에이터스튜디오 등을 갖춘 음악·뉴미디어 특화도서관으로,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.
따라서 특화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지식과 문화예술 분야의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, 민간 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이번 수탁기관 모집공고가 시의회의 사전 동의에 앞서 진행된 만큼, 향후에는 의회 연간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동의 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 모집공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임.
- 아울러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지속적인 지도·점검을 통해 서비스의 공공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☑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☑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면,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위탁기간의 변경
2.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
3. 그 밖에 재동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④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위탁사무 내용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위탁기간
6. 수탁기관 선정방식
7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8.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9.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
10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